



- 2019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, △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, △발달장애인 주간활동·방과후활동서비스 시행, △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, △장애학생 진로·직업 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·발표 등 장애인 정책의 큰 성과가 있었다.
- 특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를 위한 시군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와 읍면동 장애인 중심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지원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.

사례 : 장애인 전담 사례관리

- ① ○○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는 여성 중증 지적 장애인이 가정폭력 피해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자살 시도를 하였다는 의뢰를 받고, 정신건강복지센터, 장애인복지관과 솔루션 회의를 실시한 결과,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를 실시하고, 성인권상담센터 가정폭력 상담과 함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공공후견인을 연계 중
- ② ○○시 △△구 □□동은 고령의 중증 호흡기 장애인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혼자 생활한다는 의뢰를 받고 행복e음 맞춤형 상담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가사·간병방문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, 관내 반찬지원 사업 신청 안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하여 정서적·심리적 지원 중

- 또한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내실화, 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,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, 장애인용 현금지급기(ATM) 보급 확대 등이 주요 성과\*로 평가되었다.

\* △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: ('18)월평균 120.4시간→('19)142.6시간 △장애인 연금 기초급액: ('18)25만 원→('19)30만 원 △특수학교 및 학급: ('18)176개교 10,676학급→('19)178개교 11,105학급 △장애인용 ATM 보급률: ('18)93.7%→('19)98.9%

- 올해는 △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(이동지원), △중증 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, △시청각 장애인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, △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시행계획에 포함되었다.

○ 5대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**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복지·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(17개 과제)**

▲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 개선·보완 ▲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확대(8만1000명 →9만1000명) ▲ 장애인 건강보건인프라 확충(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·센터 2개소,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 11개) ▲ 치과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

- **교육·문화·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(14개 과제)**

▲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(178교, 1만1105학급→182교, 1만1355학급) ▲ 범부처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▲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(8만 원→9만 원)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강화 ▲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강화(생활체육지도자 800명→1000명, 스포츠강좌이용권 6개월→8개월) 등

- **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(10개 과제)**

▲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1.6만 가구 혜택) ▲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▲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(장애인고용법 개정) 등

- **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(13개 과제)**

▲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확대(13개소→17개소) ▲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▲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(주간활동 2500명, 월88시간→4000명, 월100시간, 방과후활동 4,000명→7,000명) ▲ 발달장애인 거점병원·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(8개소) 등

- **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(12개 과제)**

▲ 정부공공기관 운영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(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) ▲ 장애인복지관 웹 접근성 개선 지원 ▲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지속 추진(저소득층 보급률 80%→90%) ▲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추진 등

**(안건2)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 (보고)**

□ 또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한 1단계 추진내용의 개선·보완 및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.

○ 먼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(이하 종합조사) 및 활동지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·논의하기 위해 장애인단체,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.

\* 「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」

-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 조사를 보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.
- 아울러, '지역복지사업 평가'에 장애인 정책 분야를 신설하여 장애인 맞춤형 상담,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등 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.
- 한편,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(이동권 분야)의 주요 내용은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을 기본 방향으로 고시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다.
- 개략적으로는,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보완하여 특별교통수단,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장애인의 사회·환경적 특징을 고려하는 한편,
-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, 광역이동지원센터,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.

□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장애인단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-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“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·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- 아울러, “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누구나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는 날이나,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기념식을 연기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.”라고 언급하였다.
- 끝으로 “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, 방역물품 제공, 돌봄 공백 최소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”라고 전했다.

< 붙임 > 1.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 (요약)  
2. 코로나19 관련 장애인 지원 대책 요약

**붙임 1**

**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 (요약)**

**장애인정책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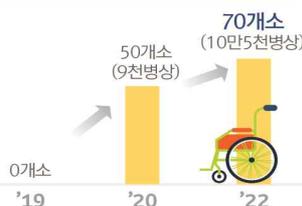
**'19년 실적 및 '20년 계획**

**보건  
복지**

**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**



**재활의료기관 지정**



**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**



**교육  
문화  
체육**

**특수학교(학급)**



**문화누리카드 지원금**



**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**



**경제  
소득**

**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**



**장애인 일자리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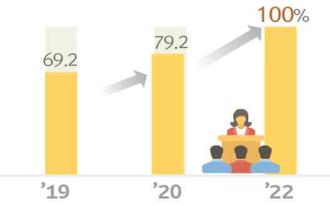


**맞춤, 발달훈련센터**



**권익  
보호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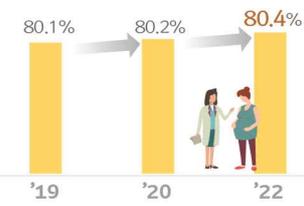
**인식개선교육 이행률**



**학대피해 장애인 보호 센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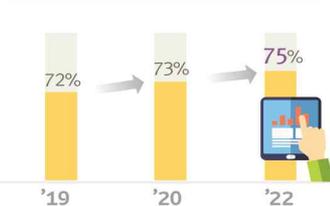


**여성장애인 임신출산비용 지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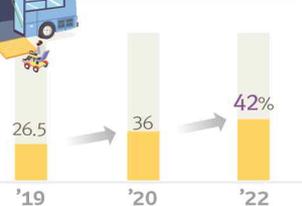


**사회  
참여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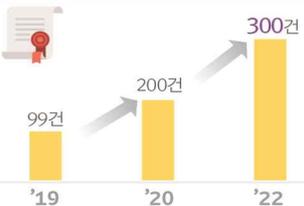
**장애인 디지털 정보화 수준**



**저상버스 보급률**



**민간 BF 인증**



**붙임 2**

**코로나19 관련 장애인 지원 대책 요약**

□ **감염병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**

- 코로나19 관련 모든 브리핑 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(2월)
  - \* 청각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해 복지부-농아인협회 간 선제적 업무협약 체결(20.1.16)
- 청각장애인의 상담 편의 강화를 위해 **1339 카카오톡 상담 강화 및 영상 수화 상담**(129 콜센터, 손말이음센터 연계) 개시(2월)
- 시각장애인을 위해 일본 관련 부서와 논의, **코로나 19 관련 인쇄물 배포 시 음성변환출력 QR코드 포함**(3월)
-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선별 진료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(청각·발달장애인 등)을 위한 '**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**' 지자체 배포\*(3월)
  - \* 언어치료 ACC센터 사람과 소통에서 제작, 한국농아인협회 등 의견수렴, 복지부→지자체 배포

□ **장애인 방역물품 및 마스크 구매 용이성 제고**

- 장애인 거주시설 마스크, 손소독제 보급을 위해 **국비 교부**(2~3월)
  - \* 규모 : 5600만 원, 지원인원 : 3,877명
- **공적 마스크** 수급 안정화 대책(5부제)에서 **장애인 대리구매 확대** 적용
  - \* 장애인은 대리인 범위 제한없이 누구나 장애인등록증 지참 시 대리구매 허용(3.8)
- **장애인 마스크 무상보급** 사업을 위한 공적 마스크 물량 할당(4월, 26만 장)
  - \* 장애인단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중대본 회의시 논의(4.3), 마스크수급조절회의에서 확정(4.9)

□ **자가격리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공백 방지**

- (**긴급 활동지원**)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던 장애인이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**긴급활동 급여 제공**(월 120시간)
- (**24시간 활동지원**)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은 원래의 활동지원 급여량과 무관하게 **24시간 활동지원 급여 제공**

- (보호자 부재 시 지원)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자가격리 또는 확진된 경우 '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'(월 20시간) 추가 제공
- (가족돌봄휴가)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부와 논의, 가족돌봄비용\* 지원 대상 장애인 자녀 연령 확대(3월)
  - \*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비용 보전을 위한 긴급 지원금 지급,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상이나 장애인 자녀를 둔 경우 18세 이하로 확대
- (제공인력 자격요건 완화) 돌봄 제공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교육 이수 시 누구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가능토록 조치

#### □ 장애인 복지시설 감염 예방 및 필수 서비스 유지 지원

-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방역관리지침 등 전파(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 및 장애인단체 대상, 총 8회)
- 장애인 이용시설 휴관 권고 및 휴관 시 돌봄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필수서비스 제공을 위한 긴급돌봄 등 유지 요청
- 종사자가 업무 배제된 경우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'사회 복지시설 대체인력\*'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
  - \* 기관별 퇴직자 또는 사회봉사자 등의 예비 인력풀을 사전에 작성
-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 시 활동지원서비스를 대체 이용토록 조치 및 비용청구조건을 완화하여 제공기관의 정상 운영 유도
  - \* 비용청구조건 완화(3.11일) 이후 제공기관 운영 비율 증가(3. 5. 46% → 3. 24. 78%)

#### □ 장애인 생활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적극 지원

- 확진자 이송지원 및 추가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, 격리시설 마련
  - (대구 북구 정보재활원) 대구 병실 부족으로 서울지역으로 최우선 이송
  - (경북 칠곡 밀알사랑의집) 방역기간 동안 음성자 이송(송정자연휴양림) 격리
  - (경북 예천 극락마을) 임시 격리공간으로 6개 경로당 분산 격리